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 류 면 허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사용 승인 업무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류제조자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사용 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그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한편,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지되는 주류 거래 관련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약속하고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계수기: 제조가 완료된 주류가 장치를 통과하면 주류의 수량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측정기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 ③ (생략) ④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u>7일</u>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u>5일</u>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 ⑫ (생략)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10일</u> ----- ----- ----- ----- ----- ----- ⑤ ----- ----- ----- ----- ----- ----- ----- <u>7일</u> ----- ----- ----- -----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 ----- -----

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3. (생략)

③ ~ ⑤ (생략)

-----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

-----.

② -----

-----.

1. -----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